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 31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이개호
임미애 · 서삼석 · 이소영
강준현 · 황명선 · 소병훈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,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.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,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및 제10조).

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

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9조제1항제1호카목에 따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금리로 용자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 는 용자 가. ~ 차. (생 략)	1. ----- ----- 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카.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</u>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 등) ① ~ ⑥ (생 략)	제10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9조제1항제1호카목에 따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우대금리로 용자를 실시할 수 있다.</u>